

지 상 강 좌

1993년도 관보(官報) 요약 I (1993년 1월 1일 ~ 1993년 6월 30일)

-정보통신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표준체계연구실
연구원 이선화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표준체계연구실에서는 정보통신표준체계연구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표준화 관련 법규 및 제도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내 관련 법규의 보다 신속한 변동사항을 연구에 반영키 위하여 '대한민국관보'를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에 요약정리한 내용들은 1993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관보에 게재된 내용 중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부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간추린 것이다. 상기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까지 정리하였다. 본 자료가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법률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규 : 성문의 법령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되는 국법형식의 하나. (법체계상 헌법에 다음가는 효력을 지님)
- 법령 :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조약, 조례, 규칙 등을 약칭, 좁은 의미로는 법률과 명령만을 의미
-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의 법령으로 크게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있으며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음 (법 체계상 법률보다 하위법규임)
-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공고형식을 의미함
- 공시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

도록 알리는 것

- 공고 :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 공고방법은 관보, 신문에의 게재 또는 법원, 시.도.면의 게시판에의 게시 및 일정한 공보에의 게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통지수단, 신고수단의 목적으로 이용됨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73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78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어소시에이션 제어 서비스요소의 프로토콜시방)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74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77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어소시에이션 제어 서비스요소의 정의)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75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71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의 기본모델-이름 및 주소지정방법)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76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76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추상구문표기법 (ASN.1)의 기본부호와 규칙시방)

1993년 1월 5일 (화)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63호 한국공업규격 개정 (KS C 5750 데이터전송에 있어서 데이터회선 종단장치와 데이터 단말장치 사이의 37/01편 인터페이스)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64호 한국공업규격 개정 (KS C 5751 데이터전송에 있어서 데이터회선 종단장치와 데이터 단말장치 사이의 15 편 인터페이스)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68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82 ISDN 기본액세스 인터페이스의 참조점 S 및 참조점 T에서의 인터페이스 커넥터 및 콘넥터 배열)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69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81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토큰링 액세스 방식 및 물리층시방)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70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75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추상구문표기법 (ASN.1)시방)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71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79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디렉토리-제1부 개념, 모델 및 서비스 개요)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2-1,572호 한국공업규격 제정 (KS C 5874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커넥션형 프리젠테이션 서비스 정의)

1993년 1월 6일 (수)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5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21 정보처리용어-데이터 매체, 기억 장치 및 관련장치)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6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27 정보처리용어-분산데이터처리)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7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94 정보교환용 CD-ROM의 볼륨 및 파일의 구조)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8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70 정보처리용어-컴퓨터통합 생산정보관리)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9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86 도큐멘테이션용어-기본개념)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0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88 도큐멘테이션용어-문헌 및 데이터수집, 식별 및 분석)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1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89 도큐멘테이션용어-도큐멘테이션언어)

지 상 강 좌

1993년도 관보(官報) 요약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2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87 도큐멘테이션용어-문헌)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3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90 국제집진분류법 UDC)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4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83 유통S/W 패키지의 이용자용문서 및 외장표시)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5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92 플렉시블 디스크 카드리지장치의 인터페이스)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6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93 정보교환용 플렉시블 디스크 카드리지의 볼륨 및 파일구성)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7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31 정보처리용어-계산기)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8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84 물리층에서의 데이터암호화)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9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91 소형컴퓨터시스템 인터페이스 SCSI)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0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69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의 기본참조모델-보안구조)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1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73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 기본참조모델-네트워크서비스 정의-네트워크층 어드레스부여)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2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72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 기본참조모델-네트워크서비스 정의-네트워크층 어드레스부여)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3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80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오브젝트의 식별과 구성)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4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867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5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701 표시장치에 관한 정보교환용제어 문자 기호)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6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768 정보교환용 데이터 서술파일 에 대한 규격)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7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759 하이레벨 데이터링크 제어순서의 순서요소)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8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758 하이레벨 데이터링크 제어순서의 순서요소)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9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757 하이레벨 데이터링크 제어순서의 프레임 구성)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30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711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의 라벨과 파일구성)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31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710 NRZ-1 방식에 의한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의 정보기록장식)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32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636 정보교환용 부호-로마문자)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33호 한국공업규격제정 (KS C 5632 위상변조 방식에 따른 12.7mm 나비, 9트랙, 63CP에서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의 정보기록 양식)
- 1993년 1월 7일 (목)**
- 과학기술처공고 제1992-147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환경이 법 제정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고, 특히 국내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사건에 있어서의 구제수단, 등록제도, 처벌 등 일부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①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창작이나 개발이 일반저작물과는 달리 대부분 법인, 단체의 투자와 노력이 행하여 진다는 점에서 법인, 단체명의로 공용되지 않더라도 법인, 단체를 저작자로 인정함
- ② 컴퓨터 프로그램 대여권을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함
-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프로그램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창작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④ 프로그램의 등록이 있는 경우 그 등록명의자를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그 프로그램이 등록된 창작년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효력규정을 둠
- ⑤ 특허에서 전용실시권자도 침해중지 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용사용권자에게도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권한을 인정함
- ⑥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프로그램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컴퓨터에 사용하는 행위도 당해 프로그램의 침해행위로 봄

- ⑦ '컴퓨터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쟁송절차에 필요한 감정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
- ⑧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⑨ 컴퓨터바이러스를 불법적으로 제작 퍼뜨리는 자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가능하도록 함

1993년 1월 14일 (목)

- 체신부고시 제1993-1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요령 제정
- 정보통신연구,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체신부고시 제1993-4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무선설비의 범위
- 국가통신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자가통신설비를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무선설비의 범위를 개정 고시

1993년 1월 15일 (금)

- 체신부고시 제1993-5호
전자파장해검정대상기기 중 전기, 전자기기의 세부분류품목
-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 대상기기 중 전기, 전자기기의

세부분류품목을 고시

- 세부분류품목은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TV수상기, 전기면도기, 모발건조기, 전기문서세단기, 전기믹서기, 전기가습기 임

는 폐지함. 이로써 전자파장해 지정시험기관은 제1호 생산기술원(야외시험장)에서 제25호 현대 EMI시험소(야외시험장)까지 지정됨

1993년 2월 8일 (월)

1993년 1월 16일 (토)

- 과학기술처공고 제1993-2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환경연구원'(대표자:신우식)을 설립허가하였음을 고시
 - 설립목적
정보화사회에 핵심이 되는 텔레마티크기술 및 정보환경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응용기술의 보급과 협력 등을 통하여 사회일반의 이익공여에 이바지함

- 체신부고시 제1993-12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정시험기관
 -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정 시험기관(데이콤 종합연구소)을 지정 고시

- 체신부고시 제1993-13호
전산망분야 국가표준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전산망에 관한 국가표준 4건과 기술지원서 4건을 제정하고 동법 제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망분야 국가표준을 제정(시행 1993. 6. 1)
 - 전산망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 : 4건

1993년 2월 2일 (화)

- 체신부고시 제1993-6호
전산망의 안전, 신뢰성 기준 제정고시
 - 이 기준은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의 기능유지와 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전산망 운용자 및 이용자가 전산망의 안전·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체신부고시 제1993-7호
전자파장해검정 지정시험기관
 -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파장해검정 지정시험기관을 고시하며, 체신부고시 제1992-122호('92. 12. 12.)

- 01 정부개방시스템 상호접속규약 표준
- 02 국가기간전산망 다기능 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데이터화일표준
- 03 소형컴퓨터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
- 04 국가기간전산망 패스워드 활용표준
- 기술지원서 제정 : 4건
 - 01 데이터표현의 표준개발,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서
 - 02 전산망 보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서 총론
 - 03 전산망 보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서 전산센터
 - 0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핸드북

1993년 2월 25일 (목)

- 체신부공고 제1993-20호

지 상 강 좌

1993년도 관보(官報) 요약

종합유선방송 주전송장치등의 기술적조건 제정(안)
- 종합유선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종합유선방송 주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을 정하여 함

• 체신부고시 제1993-14호

기간통신사업 투자, 출연 등에 관한 처리 규정

- 이 규정은 체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의 연구, 개발 및 그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코드없는 전화기의 세부기술적 조건

- 무선설비규칙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코드없는 전화용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세부기술적 조건을 개정고시

1993년 3월 12일 (금)

• 체신부공고 제1993-28호

초단파방송송신의 표준방식개정(안) 입법예고
- 초단파다중방송(FM다중방송)을 도입하기 위하여 초단파방송(FM방송)송신의 표준방식을 개정하여 초단파방송신호에 문자정보 등의 초단파다중방송신호를 부가하는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1993년 3월 8일 (월)

• 체신부령 제855호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체신부고시 제1993-18호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 고시

-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을 고시하며 체신부고시 제1993-7호는 폐지함. 이로써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은 제1호 생산기술원(야외시험장)에서 제26호 해동 EMC연구소(야외시험장)까지 지정됨

• 체신부고시 제1993-19호

1993년 3월 18일 (목)

• 공업진흥청공고 제1993-358호

공업표준화법시행령 개정령(안)

- 공업표준화법이 산업표준화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KS 표시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산업표준화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1993년 4월 6일 (화)

• 공업진흥청공고 제1993-252호

계량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령(안)

- 계량법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교정검사, 표준물질인증, 공인시험, 검사기관지정제도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체의 정밀측정기술향상과 고부가가치생산기반 구축을 도모코자 계량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공고

의 주파수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등을 개정 고시함

1993년 4월 26일 (월)

- 체신부공고 제1993-54호

전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 증명규칙 및 전자과장해검정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993년 4월 30일 (금)

- 과학기술처공고 제1993-26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에서는 미래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첨단과학산업 기지내에 국제수준급의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을 1995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1993년 5월 3일 (월)

- 체신부공고 제1993-58호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중 법령개정사항으로서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사항을 개정추진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993년 4월 14일 (수)

- 공업진흥청공고 1993-490호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령(안)

- 공업표준화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표준화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993년 4월 17일 (토)

- 체신부고시 제1993-31호

전자과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

- 전자과장해검정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과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을 고시(체신부고시 제1993-18 폐지함) 이로써 전자과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은 제1호 생산기술원에서 제27호 금성정보통신(주)까지 지정됨

1993년 4월 19일 (월)

- 체신부고시 제1993-32호

간이무선국의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등 개정

- 무선설비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무선국

1993년 5월 7일 (금) _____

- 상공자원부공고 제1993-25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현행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중 일부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

1993년 5월 11일 (화) _____

- 체신부고시 제1993-35
초단파방송의 송신표준방식
- 무선설비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초단파방송송신표준방식(전파관리국 고시 제465호 '78. 9.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 체신부고시 제1993-36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
-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7건을 제·개정하고 동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및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고시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제정 : 6건
01 G4 팩시밀리(등급1) 표준
02 공중패킷망용 비동기식 단말장치 표준
03 P X 64 Kbit/S에서의 시청각서비스를 위한 영상부호화 표준
04 음성주파수(300-3400Hz)의 변조방식 표준
05 고품질 음성주파수(50-7000Hz)의 부호화 표준
06 P X 64 kbit/S내의 7kHz 음성부호화 기의 사용에 대한 시스템 측면표준
- 정보통신표준개정 : 1건
01 코드없는 전화기 표준

- 이 표준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1993년 5월 13일 (목) _____

- 조달청고시 제1993-11
정부규격제정
- 물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규격을 제정하였기에 고시함

1993년 5월 17일 (월) _____

- 과학기술처고시 제1993-5
국산신기술 인정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이 규정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국산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제고와 초기 시장진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세칙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으로 개정 고시
- 이 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993년 5월 22일 (토) _____

- 체신부고시 제1993-45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 적합확인에 관한 세칙 개정고시

-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설비 및 확인절차, 방법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

통신보안 준수사항을 개정고시

- 체신부고시 제1993-48호
생활무선국무선설비의 조건
- 무선설비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조건을 개정고시

1993년 5월 29일 (토)

- 체신부고시 제1993-46호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
- 전자파장해 검정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을 고시 (1993. 4. 127 체신부고시 제1993-31는 폐지함) 이로써 전자파장해검정지정시험기관은 제1호 생산기술원(야외시험장)에서 제27호 금성정보통신(주) (대용시험실)까지 지정됨

1993년 6월 5일 (토)

- 체신부공고 제1993-70호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기통신공사업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동법시행령에 대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령(안)을 공고함

1993년 6월 1일 (화)

-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23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사업계획
- 지방중소기업이 당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체계를 구축하고자 공업발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원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집고시
- 체신부고시 제1993-47호
생활무선국무선요령 고시 중 개정
-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1993년 6월 7일 (월)

- 공업진흥청공고 제1993-715호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국제표준화된 품질경영체제 (ISO 9000시리즈)의 도입을 촉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제도를 안전위주의 안전검사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법률(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함

1993년 6월 9일 (수)

- 대통령령 제13,709호
공업표준화법시행령 개정령
- 개정이유
공업표준화법이 산업표준화법으로 전면개정됨

에 따라 공업표준화법시행령을 산업표준화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현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산업표준화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산업표준심의회의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부회를 둘 수 있게 함(영 제4조)
- 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부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거쳐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8조)
- 다) 광공업품의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하는 규격통일, 단순화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8조)
- 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제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품목별 처분기준을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영 제29조)
- 마)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제거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청문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영 제30조)
- 바)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산업표준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31조 및 제33조)

국무총리훈령 제279호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지시

-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의 정비,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의 확대도입,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법령의 정

비, 알기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 원칙에 따라 현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전부를 검토 대상으로 함

1993년 6월 12일 (토)

- 체신부고시 제1993-52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가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개정 고시

1993년 6월 18일 (금)

- 상공자원부령 제8호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개정령

- 공업표준화법 및 동법시행령이 산업표준화법 및 산업표준화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산업표준화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 함

- 주요골자

- 가)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개정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공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함(제2조)
- 나)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사후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도·감독방법 등을 정함(제13조 내지 제17조)
- 다)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공

장심사 또는 검사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정함 (제18조, 제19조 및 제25조)

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의 공장이전, 생산조건변경 및 허가 공장 양도 등의 보고제를 폐지하고,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생산상황보고는 6월에 한번 하게 하던 것을 1년에 한번 하게 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의 부담을 완화함 (제20조)

마)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정하는 단체표준의 승인신청 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 (제27조)

1993년 6월 21일 (월)

-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225호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
-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함

1993년 6월 25일 (금)

- 과학기술처공고 제1993-35호
대덕연구단지관리법(안)
- 지난 74년부터 건설되어 온 대덕연구단지는 연구단지 건설,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공업단지 조성의 일반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교육·연구 특수지역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93년말로 동법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 연구단지를 당초 조성목적대로 유지,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1993년 6월 28일 (월)

- 체신부공고 제1993-84호
위성통신법 제정(안)
- 다가오는 위성통신시대에 대비하여 위성통신 설비의 설치·운용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제도를 마련하고, 위성통신·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며, 위성통신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급속히 변모하는 기술발전 추세 및 다양한 위성통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1993년 6월 30일 (수)

-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45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채용범위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함
- 체신부고시 제1993-59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 역무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5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를 고시

1993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 호의 지면을 통해 만나고자 한다.